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3. . .<br>(제 회) |      |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총리<br>(국가보훈처 소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3. . .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있으면 신체검사 없이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092호, 2022. 12. 16. 공포, 2023. 6. 17. 시행)됨에 따라,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범위와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시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받을 수 있는 범위에 ‘중증 암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’로서 보훈병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(안 제13조제1항제6호나목)

서면 신체검사 대상자에 중증 암환자, 중증 뇌혈관질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를 포함)

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의 범위 규정  
(안 제13조제2항)

국군수도병원, 경찰병원,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 
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함

다.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(제95조제2항 및 제4항)
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에  
가산하는 이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국세환급가산  
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

2) 환수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은  
채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  
되, 연체금 부과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

라.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(제95조제5항 및 제6항)

납부의무자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 
하는 경우에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  
게 할 수 있도록 함

마.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 
(별표10의2)

생활조정수당 및 추가지원금 지급, 상속인에 대한 보훈급여금등 환  
수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  
자 정보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  
도록 함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의 장이 서면(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애인단서는 제외한다)으로 심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
나. 중증 암환자, 중증 뇌혈관질환자, 중증 심장질환자, 중증 화상환자, 중증 외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인 경우

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6조의3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
1.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
2. 「국군의무사령부령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 중 국군수도병원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
가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
나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병원

제32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

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5조(보훈급여금등의 환수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(이하 “환수금”이라 한다)를 환수 처분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처분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(상속인을 포함하며,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.

②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 대상 보

환급여금등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보환급여금등”이라 한다)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

1. 이자율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

2. 기간: 환수보환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. 다만,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보환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보환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.

③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.

④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(이하 이 조에서 “연체금”이라 한다)은 환수금 납부기한(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,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)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수보환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

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, 회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,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.

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
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
3.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
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,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.

제97조제1항제1호 중 “자의 계급·군번·성명·본적·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”을 “사람의 계급·군번·성명·등록기준지·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”으로 한다.

제100조 중 “제1장제2절”을 “제1장제2절(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)”로

한다.

제102조제1항제45호 중 “보훈급여금 등의 환수, 국세 체납처분”을 “보훈  
급여금등·이자 및 연체금의 환수, 국세강제징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  
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2. 제9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 
제102조의2제1항제7호 중 “보훈급여금 등”을 “보훈급여금등·이자·연  
체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제9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 
별표 10의2에 제7호의2, 제19호의2,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  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 
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

19의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  
정보

21의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  
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  
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

21의3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  
한 정보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제 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했거나 법 제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|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|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13조(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)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13조(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)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1. ~ 3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4.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(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적은 것으로 한정한다)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6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의 장이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  |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의 장이 서면(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른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제외한다)으로 심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
<신 설>

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
나. 중증 암환자, 중증 뇌혈관질환자, 중증 심장질환자, 중증 화상환자, 중증 외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인 경우

② 법 제6조의3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
1.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

2. 「국군의무사령부령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 중 국군수도병원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
제32조의2(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방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 2제1항을 준용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7. · 8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제95조(보훈급여금등의 환수) ①  
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 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 급여금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자 (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)에게 보훈급여금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

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
가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

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

공공보건의료기관

나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

3호 각 목에 따른 병원

제32조의2(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방법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  
료지원비

7. · 8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95조(보훈급여금등의 환수) ①  
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 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(이하 “환수금”이라 한다)를 환수 처분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처분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 (상속인을 포함하며,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.

한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나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,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.

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.

②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대상 보훈급여금등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보훈급여금등”이라 한다)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

1. 이자율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

2. 기간: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. 다만,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한다.

③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 
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  
은 재산의 한도는 「국세기본법  
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 
산정한다.

④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체  
금(이하 이 조에서 “연체금”이  
라 한다)은 환수금 납부기한(이  
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 
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  
하며,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 
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  
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  
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  
일을 말한다) 다음 날부터 그  
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  
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  
수보hun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  
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 
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 
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  
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  
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  
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  
hun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, 회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,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.

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
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97조(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) ①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</p> <p>1.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<u>자의</u> <u>계급·군번·성명·본적·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</u>이 군 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0조(장애인에의 준용) 법 제5</p> | <p>3. <u>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</u></p> <p>⑥ <u>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,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.</u></p> <p>제97조(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----- <u>사람의</u> <u>계급·군번·성명·등록기준지·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</u>-----<br/>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0조(장애인에의 준용) -----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조제5항·제6항, 제12조제2항  
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  
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을 준  
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.

제102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(제12호부터 제15호까지, 제17호, 제20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)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하고,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,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3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 
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  
한다.

1. ~ 44. (생략)

45.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,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산처분

46. ~ 51. (생략)

## <신 설>

## ② 삭 제

③ ~ ⑥ (생략)

제10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 
정보의 처리) ①국가보훈부장관  
(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  
장관의 권한을 위임·재위임 또  
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 
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 
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  
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  
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  
령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  
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  
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1. ~ 44. (현행과 같음)

45. ----- 보훈급여  
금등 · 이자 및 연체금의 환수,  
국세강제징수-----  
 --

46. ~ 51. (현행과 같음)

52. 제9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  
른 환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 
사항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0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 
정보의 처리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합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삭제</p> <p>7. 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<br/> <u>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반<br/> 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</u></p> <p>8.·9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<br><p>10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|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<br><p>7. -----<br/> <u>보훈급여금등·이자·연체금</u><br/> -----</p> <p>8.·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의2. 제95조제5항 및 제6항에<br/>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에 관<br/> 한 사무</u>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2 - 5420 |